05_02. 유상 동승자

판결요지	동승 과실	사건번호
택시승객,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직진차에 받힘, 택시는 좌회전 위반.	0%	서울고법 86나1804
조수석에 탄 화주, 야간, 앞에 선 차를 추돌.	0%	서울고법 86나3988
지프차 보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그 요청으로 원고는 지프차 뒷좌석에 동승, 안개, 과속(시속 20km 이상), 원고는 운전면허 소지, 조수석엔 선임 탑승자 있고, 앞차를 추월하다 뒤집어져 반대방향 트럭에 받힘.	0%	서울고법 85나611
택시승객, 추석성묘 정원 5명인데 7명이 탑승, 시속90km(과속),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행하다 우측에서 40km로 진입한 봉고차에 우측 뒷문부분 받힘, 우측 시야장애를 승객들이 초래.	20%	서울고법 86나2955
조수석에 탄 화주, 운전수 졸음운전으로 앞차 추돌.	0%	서울고법 86나3931
택시승객, 안전밸트 미착용, 택시 중앙선침범으로 반대차와 부딪힘.	10%	서울고법 86나2651
버스승객, 교량 통과 무렵, 교량상판이 붕괴되어 추락면하기 위하여 과속으로 내려앉은 부분과 내려앉지 않은 부분 사이의 턱을 지나면서 그 충격으로 승객 부상. 불가항력주장 배척(앞차의 진행 상황으로 알 수 있었다)	0%	서울고법 86나2652
버스 승객, 만취하여 행패 부리므로 손님들 다 내려주고 피해자1인과 함께 파출소 신고하러 가던 중 30도 우곡각지점을 시속60km이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는 바람에 왼쪽에 열려있던 가로53cm, 세로72cm 창문 밖으로 추락, 부상.(고의로 뛰어내렸다는 면책항변 배척)	60%	서울고법 86나3661
자동차 대여회사로부터 운전수와 함께 승용차 대여받아(렌트카) 주행 중, 제한시속 60km를 70km로, 새벽 어둡고 비로 미끄러운 길을 운전수가 중앙선 침범 20cm 가다가 반대차량과 충돌로 동승 중인 차량 임차인들이 사상.	0%	서울고법 87나193
소속회사의 작업 버스에 타고 가다 작업 중에 도착하여 동료인부는 다 내린 뒤 버스 안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던 중 위 버스가 다시 출발하려는 순간 뒤늦게 버스에 성급히 내리다가 굴러 떨어진 후 4개월간 약만 먹으며 작업 계속하여 악화됨, 2개월 전에도 소속회사 설치 도랑에 굴러 떨어져 다친 상처도 있었음.	40%	서울고법 87나471
13세 소년, 버스에 올라섰다가 우산을 출입문 밖으로 떨어뜨려 이를	10%	서울고법

주우려고 급격히 출입문으로 내려서다가 개문발차하는 버스에서 추락하여 사고, 운전수는 승객의 승하차 여부 및 출입문 개폐 미확인, 승객은 주의 안하고 출입문 접근.		87나1261
사고 경위불명, 종합병원 의사가 응급차에 동승 중 교차로에서 신호위반버스와 충돌, 의사는 응급차 운전수에게 단속의무 없다.	0%	서울고법 86나2828
택시 운전수 졸음운전으로 전봇대 받음. 앞자리 승객의 과실여부	0%	서울고법 86나915
고속도로를 화물차 운전하던 가해 운전수가 조수와 잡담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중인 다른 화물차 충격. 가해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아 화주의 과실	0%	서울고법 86나1805
택시승객, 안전밸트 미착용, 요추압박 골절상, 피해자과실	10%	서울고법 87나3842
트럭 동승자, 안전밸트 미착용, 차량 충돌사고, 경추 및 요추부 상해. 피해자과실	10%	서울고법 87나3219
야간운행 중 운전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석 뒤에 있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고당한 조수.	0%	서울고법 87나2868
담당 운전사로서 동료에게 운전 허용, 동승하고 가다가 사고,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도로 이탈하여 길옆 3.4m 아래 논으로 추락, 운전미숙인데도 사고방지 위한 적절한 지시 안한 과실.	50%	서울고법 87나3892
정원초과 탑승,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난 경우 피해자과실	0%	서울고법 87나4297
영동고속도로의 대관령 내리막길, 과속운전으로 단속 경찰에 적발, 원고는 운전자와 국민학교 동창생. (과속운전 제지않은 과실과 안전밸트 매지 않은 과실)	20%	서울고법 87나4025
야간, 편도2차선의 강변도로, 피고는 무면허로 음주한 채 승용차 운전하고 가다가 진로 잘못 판단하여 중앙선 침범으로 반대차선으로 들어감, 원고는 피고와 같은 회사 직원으로 같이 음주 후 조수석 승차.	30%	서울고법 88나6124
선글라스를 끼고 택시 앞좌석 승차, 안전밸트 미착용, 우안 안구파열. 피해자과실	20%	서울고법 88나18332
경운기의 적재함에 동승, 가해차량이 선행 트럭 추월하여 중앙선 넘어오다가 경운기와 충돌.	15%	서울고법 88나18783
경부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차체 두동강, 사망승객 안전밸트 미착용, 망인과실여부	0%	서울고법 88나24009